

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9. 3. 25.

개정 2019. 7. 17.

개정 2019. 9. 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순천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 7. 17.)

제2조(구성) ①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는 심리상담실과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
② 학생상담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부처장이 겸직하며, 센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19. 7. 17.)

③ 행정실에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고,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상담 기본계획 수립
2. 학생상담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관리(개정 2019. 7. 17.)
3.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(개정 2019. 7. 17.)
4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운영(개정 2019. 7. 17.)
5. 각종 심리검사 지원(개정 2019. 7. 17.)
6. 각종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(개정 2019. 7. 17.)
7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상담인력) ① 센터에는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상담원은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담 및 임상심리분야 2급 이상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객원상담원은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상담심리사, 전문상담사, 청소년상담사, 임상심리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전문가 중 하나 이상의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, 교무부처장, 인재개발본부장, 행정실장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내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9. 7. 17.)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9. 7. 17.)

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의2(학생상담통합지원 협의회) ① 센터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생상담통합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지역 유관기관 학생상담 관련 관계자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내 상담 활동의 환류 시스템 보완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때 협의회장이 개최 한다.

제7조(개인정보 보호) 센터의 교직원 및 상담인력 등 모든 구성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.

제9조(보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19. 7. 17.)

부 칙<2019. 3. 25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7. 1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9. 10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